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2월 1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바,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) 보험 가입(안 제3조)
- 다)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) 보험금 청구(안 제7조)
- 마) 보험금 지원 제외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대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내용

(1) 안 제2조(정의)
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, 제3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사용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

(2) 안 제3조(보험 가입)

- 안 제3조는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
(3) 안 제4조~제7조(보험회사의 선정, 보험료 납부·보장기준·청구)

-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, 보험의 보장기준,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등의 보험 지원에 따른 내용을 구성함.

(4) 안 제9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

- 구청장이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에 따른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 사항의 확인 규정을 명시함.

다. 검토의견

-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향후에도 장애인등의 사용자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
<장애인 전동보장구 필요 및 소지 현황>

필요 및 소지별	전동보장구 종류별	2014		2017		2020	
		비율(%)	추정수(명)	비율(%)	추정수(명)	비율(%)	추정수(명)
필요	전동휠체어	9.5	154,581	8.5	131,512	9.1	133,193
	전동스쿠터	6.7	109,249	6.2	96,152	5.0	73,094
소지	전동휠체어	3.7	59,748	4.1	63,015	6.1	90,037
	전동스쿠터	3.2	52,456	2.6	39,578	3.6	52,510

자료 : 통계청 : 국가통계포털

- 현재 우리 구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약 450명으로 추정(기초수급자 180명, 공단급여 270명)

<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>

-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
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: 공단 고시가격의 90% 지원
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
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
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금액 100% 지원
- ※ 우리구 대상자 450여명 추정(기초수급자 180명, 공단급여 270명)
- ※ 노인, 국가유공자의 전동보장구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 없음

○ 본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증가 및 불편한 보행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」(2022. 10. 15제정)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, 본 조례안과 보험 보장 등에 있어 중복 지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※ 타 자치단체 제정현황 : 5개 자치단체(서울시 조례 없음)

- ▶ 최초 제정 : 대전광역시 유성구(2020.12.)
- ▶ 양천구('21.7.), 노원구('21.11.), 경기 하남시('21.11.), 충남 보령시('21.12.)
- ▶ 입법예고 중 : 세종특별자치시, 서울시 관악구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